

보건사회부 고시 제43호

###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중 개정

보건사회부 고시 제 7 호(77.2.14)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79. 7. 31

보건사회부장관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중 2. 중금속 다음에 3. 첨가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첨가물

식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첨가물이 동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첨가물의 함유는 원료식품으로부터 유래된 범위 안에서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식품별 규격 및 기준 28. 미강유 가. 규격 2. 비중중 미강유 및 정제 미강유의 "0.913~0.919"를 각각 "0.913~0.922"로 한다.

제 4 식품별 규격 및 기준 38. 얼음 가. 규격 (1)성장중 "얼음을 녹인 물은 무색투명하며"를 "얼음은 각빙으로서 반이상이 무색 투명하며, 이를 녹인 물은"으로 한다.

제 4 식품별 규격 및 기준 38의 2 어업용 얼음 본문중 "황색으로 착색 동결한 것으로서 어업용에 사용하는 얼음을 말한다"를 "동결한 것으로서 어업용에 사용하는 불투명한 얼음을 말한다"로 가. 규격 (1)성장중 "황색으로 착색되어 식용 얼음과"를 "불투명하여 식용얼음과"로 하고 (6)"색소"란과 나. 시험방법중 (6)"색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 4 식품별 규격 및 기준 중 76 튀김류 다음에 77, 옥수수기름(옥배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7.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기름이라 함은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착유하여 정제한 기름을 말한다.

가. 규 격

- (1) 색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 (2) 비중(25°/25°) : 0.915~0.921
- (3) 굴절유(25°) : 1.470~1.474
- (4) 수분(%) : 0.2이하
- (5) 불검화물(%) : 2.0이하
- (6) 산가 : 1.5이하
- (7) 검화가 : 187~195
- (8) 고오드가 : 103~130
- (9) 타알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시험방법

26. 채종류에 따라 시험한다.

제 6 완통품의 규격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6 완통품의 규격및 기준

완통품중 영유아가 주로 입에 접촉함으로써 그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2. 규격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 류

가. 합성수지제 완통품

나. 동, 납, 아연, 안치몬 기타 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한 금속제 완통품

다. 고무제 완통품

라. 종이, 나무, 가죽, 셀룰로이드, 흙, 동물의 털 또는 도자기제 완통품

2. 규격및 기준

가. 완통품은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완통품은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색료가 용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무방하다.

다. 완통품은 모서리나 돌출 부분이 인체에 상처를 줄 위험성이 있는 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시험방법

가. 합성수지제 완통품의 시험방법

- (1) 시험용액 조제 : 검체를 물로 잘 씻은 다음 표면적 1cm<sup>2</sup>에 대하여 물 2ml의

## 食品등의 規格 및 基準중 개정

비율로 미리 40°C 가온한 물에 담근 후 시계 접시로 덮고 40°C를 유지하면서 때때로 저어가며 30분간 침출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2) 시험

(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의 침출용액으로 가. 합성수지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시험방법 (2) 시험 (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이하이어야 한다.

### (나) 증발 잔류물

위의 침출용액으로 가. 합성수지에 기구·용기 및 포장의 시험방법 (2) 시험

(마) 증발잔류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 (다) 중금속

위의 침출용액 20ml를 베슬러관에 취하여 회초산 2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

하여 50ml로 한다. 따로 납 표준용액 (1ml=10 $\mu$ g) 2ml를 베슬러관에 취하고 회초산 2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비교표준액으로 한다. 양액에 유화나트륨시액 2방울씩을 가하여 잘 섞어 5분간 방치한 후 양관을 백색을 배경으로 하여 위와 옆에서 관찰할 때 시험용액의 색이 비교 표준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안된다.

### (라) 비 소

위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약 20ml로 농축하고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 제 7 일반시험법 5. 유해성 금속 시험법 나. 비소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정색은 비소 표준용액 1ml 및 물 20ml를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색깔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준 0.01ppm 이하)

### (마) 카드뮴

위의 시험용액으로 나, 도자기제, 용기류 또는 범랑 도포의 기구 용기의 시험방법 (2) 시험 (다) 카드뮴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준 0.5ppm 이하)

### (바) 색 소

위의 시험용액을 농축시켜 제 7 일반시험법 2. 착색료 시험법중의 여지크로 마트 그래피법에 따라 시험할 때 허용의 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